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83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중 광고비용과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나. 주소정보위원회 명칭 정비 (안 제6조)
- 다.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 9. 29. ~ 10. 19.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중 광고비용과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구청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 중 유료의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광고비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위탁 시 "최근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로명주소법」의 조례 위임사항인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시 광고비용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에서 "주소정보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 민주적 결정을 촉진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 또한,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의 위탁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도로명주소법

-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 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 ⑫ (생략)

제31조(조례의 제정) <u>지방자치단체는</u>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u>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u>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 라 한다) 또 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 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

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 하려는 경우
- 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 ② ~ ③ (생략)
-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정한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